국제삼보연맹 집행위원회 승인

2020년 10월 4일

시각장애인삼보 등급분류 규정



목차

제 1 장 일반조항 4

제 1 조 적용범위 4

제 2 조 삼보 선수, 선수 보조인원, 등급분류요원의 권리와 의무 5

제 2 장 등급분류요원 6

제 3 조 등급분류요원 6

제 4 조 등급분류사 역량, 교육, 인증 7

제 5 조 등급분류사 행동강령 8

제 3 장 선수 심사 8

제 6 조 일반 조항 8

제 7 조 시각장애 9

제 8 조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평가 9

제 9 조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10

제 10 조 스포츠등급 11

제 11 조 분류 미결 11

제 4 장 선수 심사, 등급분류단 12

제 12 조 등급분류단 12

제 13 조 등급분류단의 의무 12

제 14 조 선수 심사 세션 13

제 15 조 대회 중 관찰 13

제 16 조 스포츠등급 상태 14

제 17 조 다중 스포츠등급 15

제 18 조 심사 결과 공지 16

제 5 장 '요구 조건 불충' 스포츠등급 16

제 19 조 일반 조항 16

제 20 조 필요한 장애 없음 17

제 21 조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없음 17

제 6 장 항의 제기 18

제 22 조 항의 적용 범위 18

제 23 조 항의 제기 18

제 24 조 항의 절차 18

제 25 조 항의 제기 합리적 근거 19

제 26 조 항의 심사 위원회 19

제 27 조 항의 심사 위원회 부재 20

제 7 장 징계 및 기타 위반 20

제 28 조 심사 세션 진행 중 위반 20

제 29 조 심사 세션 진행 중지 20

제 30 조 고의적 사실 왜곡 21

제 8 장 기타 조항 22

제 31 조 의료검진 22

제 32 조 선수 정보 활용 23

제 33 조 등급분류 분야 연구 23

제 34 조 삼보 선수 공지 23

제 35 조 등급분류 자료 보호 23

제 36 조 등급분류 자료 공개 24

제 37 조 등급분류 자료 보관 24

제 38 조 등급분류 자료 접근 권한 24

제 39 조 등급분류 총괄 명단 ('마스터리스트') 24

제 9 장 항소 25

제 40 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25

제 41 조 항소 제기 및 심사 25

용어 26

부록 1 28

부록 2 32

부록 3 33

제 1 장　　일반조항

제 1 조　　적용범위

일반조항

1. 본 규칙과 등급분류 규정은 이하 등급분류 규정이라 한다.
2. 등급분류 규정은 국제삼보연맹이 (이하 피아스) 수립하였다.
3. 본 등급분류 규정에 부록이 포함된다. 부록은 등급분류 규정의 필수불가결 일부이다.
4. 본 등급분류 규정은 피아스 스포츠 규정의 일부이다.
5. 등급분류 규정은 삼보 선수 심사를 목적으로 고안된 등급분류 양식으로 보충된다. 피아스는 필요한 경우 등급분류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등급분류

6. 등급분류은 아래를 목적으로 한다:
 a) 시각장애인삼보 대회 출전 자격 확인
 b) 시각장애가 스포츠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적용범위

7. 본 등급분류 규정은 피아스에 등록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한, 피아스가 조직, 승인, 공인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삼보 선수, 코치, 보조인원 및 등급분류요원에 적용된다.
8. 본 등급분류 규정은 다른 모든 피아스 규정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본 등급분류 규정과 다른 규정 간 모순이 있는 경우 등급분류 규정이 우선된다.

국제 등급분류

9. 피아스는 선수가 본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스포츠등급을 지정받고 스포츠등급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요구 조건 불충'(NE) 등급 제외) 국제대회 출전을 허가한다.
10. 피아스는 공인대회(또는 기타 피아스가 지정한 대회)에서 선수들이 본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스포츠등급을 지정받고 스포츠등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피아스는 국가삼보연맹들에 사전에 피아스 공인 대회 및 행사 정보를 공지한다.

해석 및 국제패럴림픽규정

11. 조항 레퍼런스는 본 등급분류 규정의 조항을 의미하며 부록 레퍼런스는 본 등급분류

규정 부록을 의미한다.

12. 본 등급분류 규정에서 스포츠, 스포츠 종목이라 함은 삼보 종목의 틀에서 시각장애인삼보 종목을 의미한다.
13. 본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은 본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이다. 본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과 등급분류 규정을 피아스가 변경, 보충, 수정할 수 있다.
14. 본 등급분류 규정에서 사용되는 부제목은 편의를 위한 목적이고 레퍼런스 참조가 가능한 조항과는 달리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15. 본 등급분류 규정은 독립적인 내용으로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나 2015년도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등급규정과 국제패럴림픽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삼보 선수, 선수 보조인원, 등급분류요원의 권리와 의무

1. 피아스는 적시에 국가연맹과 등급분류요원에게 본 등급분류 규정을 공지한다
2. 삼보 선수의 권리와 의무:
 a) 본 등급분류 규정에서 정한 모든 규칙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준수한다
 b) 심사 절차에 성심껏 임한다
 c) 피아스에 건강상태 및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력장애 유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d) 본 등급분류 규정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활발히 협조한다
3. 선수 보조인원의 권리와 의무:
 a) 본 등급분류 규정에서 정한 모든 규칙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준수한다
 b) 선수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등급분류과 소통에 있어 긍정적이고 공통의 자세를 형성한다
 c) 등급분류체계의 고안, 관리, 도입을 지원한다
 d) 본 등급분류 규정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활발히 협조한다
4. 등급분류요원의 권리와 의무:
 a) 본 등급분류 규정에서 정한 모든 규칙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숙지
 b)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등급분류과 소통에 있어 긍정적이고 공통의 접근을 형성한다
 c) 등급분류체계의 고안, 관리, 도입을 지원하고 교육 및 연구에도 참여한다
 d) 본 등급분류 규정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활발히 협조한다

제 2 장 등급분류요원

제 3 조 등급분류요원

1. 등급분류요원은 본 등급분류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피아스가 등급분류요원을 임명하며 각 요원은 피아스 등급분류 조직, 이행,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등급분류 총책임자

2. 피아스가 등급분류 총책임자를 임명한다.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피아스 등급분류과 관련한 사안의 지휘, 관리, 조율, 이행을 책임진다.
3. 등급분류 총책임자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피아스는 다른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공동으로 (이러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등급분류요원 행동강령 준수에 동의하는 조건 하에) 등급분류 총책임자 기능 수행을 위해 임명한다
4.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공인된 등급분류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5.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특정 의무를 위임하거나 특정 과제 수행을 임명받은 등급분류사들 또는 피아스가 권한을 위임한 자에게 맡길 수 있다.
6. 본 규정의 그 어느 조항도 등급분류 총책임자가 (만약 등급분류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등급분류사 또는 수석 등급분류사를 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등급분류사

7. 등급분류사는 피아스가 공인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자로 등급분류단의 일원의 자격으로 삼보선수 심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진행한다.

수석 등급분류사

8. 수석 등급분류사는 특정 대회에서 등급분류과 관련한 사안의 지휘, 관리, 조율, 이행을 위해 임명된 등급분류사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

8.1. 심사 세션에 참석할 삼보 선수들 지정

8.2. 본 등급분류 규정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등급분류 진행 중 등급분류사의 활동 감독

8.3. 피아스와 협의하여 항의건 관리

8.4. 등급분류사들이 해당 대회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회 조직위와 소통하여 교통, 숙박, 이동과 관련한 업무 조율.

9. 수석 등급분류사는 특정 의무를 위임하거나 특정 과제 수행을 다른 등급분류사들 또는

다른 피아스 직원 및 관계자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춘 해당 대회 조직위 관계자에 맡길 수 있다

등급분류사 견습생

10. 등급분류사 견습생은 피아스 등급분류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이다.
11. 피아스는 등급분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등급분류단의 감독 하에 삼보선수 심사 전체 또는 일부에 참여하여 교육 받을 등급분류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 조 등급분류사 역량, 교육, 인증

1.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사 필요 역량을 갖춘 등급분류사임을 입증하는 피아스 인증을 받아야 등급분류사로 활동할 수 있다.
2. 피아스는 등급분류사 훈련과 교육을 담당하여 등급분류사 역량의 습득 및 유지를 확보해야 한다
3. 피아스는 등급분류사 역량 기준을 투명하고 알기쉽게 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등급분류사 역량에 다음이 포함된다:

3.1. 본 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3.2. 해당 종목 기술 규정의 이해를 포함하여 등급분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이해

3.3.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등급규정과 국제패럴림픽표준에 대한 이해

3.4. 피아스 등급분류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능력, 역량:

a) 안과의사 자격증 보유 (시력 의학 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등급분류사에 한하여)

b) 코치 경력을 보유 또는 해부학, 생체역학, 스포츠 지식 보유 및 피아스가 판단하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수준의 시각장애인 교육학 및 심리학 지식

4. 피아스는 등급분류사의 역량 평가를 위한 등급분류사 인증 절차 규정을 정한다. 절차는 아래를 포함한다:

4.1. 등급분류사 교육생 인증 절차

4.2. 인증 기간 내 수준 평가

4.3. 부적격 결과 처리 절차 및 인증 회복 또는 취소 절차

4.4. 등급분류사 정기 인증 진행 규정

5. 피아스는 등급분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될 기초 수준의 기준을 정한다. 피아스는 기초 수준 해당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사 교육을 제공한다.
6. 피아스는 등급분류사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신규인증 및 재인증을 진행한다.

7. 피아스는 등급분류사의 선수 특정 능력 평가 진행 권한을 제한하거나 다른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7.1. 등급분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심사 단계 제한

7.2. 등급분류사 자격증 최대 유효기간

7.3. 등급분류사 역량에 따라 특정 기간동안 인증 심사가 진행된다는 조건

7.4. 등급분류사에 요구되는 역량 보유 사실을 피아스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급분류사 인증이 취소된다는 조건

7.5. 등급분류사에 요구되는 역량 보유 사실을 피아스가 확인하는 경우 등급분류사 인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조건

제 5 조 등급분류사 행동강령

1. 피아스 등급분류 절차의 무결성은 등급분류요원의 행동에 달렸다. 따라서 등급분류사 행동강령으로 명명하는 전문가에 걸맞는 행동 기준이 설정된다.
2. 모든 등급분류요원은 등급분류사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https://www.paralympic.org/sites/default/files/document/130625114507663_IPC+Code+of+Ethics.pdf).
3. 등급분류요원이 행동강령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피아스에 공지해야 한다.
4. 피아스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하여 필요에 따라 징계조치한다.
5. 피아스는 등급분류사에게 실질적인, 가설적인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권한이 있다.

제3장 선수 심사

제 6 조 일반 조항

1. 본 등급분류 규정으로 삼보 선수에게 스포츠등급을 지정하고 스포츠등급 상태를 정하는 프로세스, 단계, 심사 기준, 방식을 정한다. 이 프로세스를 선수 심사라 일컫는다.
2. 선수 심사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본 등급분류 규정은 다음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다:

2.1. 해당 스포츠 종목이 요구하는 시각장애 유무 평가

2.2. 특정 과제 수행 및 스포츠 활동의 가능 정도에 따른 스포츠등급 지정 (및 스포츠등급 상태 지정)

제 7 조 시각장애

1. 피아스가 규정하는 스포츠 종목에 출전을 원하는 삼보 선수는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시각장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장애는 상시적이어야 한다.
2. 본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에 피아스가 규정하는 스포츠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시각장애 요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3.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장애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장애로 간주된다.

제 8 조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평가

1. 피아스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삼보 선수의 시각장애 유무를 판단한다.

1.1. 삼보 선수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종목 경기에 출전 할 수 있음을 확정하기 위해 피아스는 선수로 부터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2. 피아스가 삼보 선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도구는 전적으로 피아스의 소관이다. 피아스는 선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가 다분히 가시적이어서 증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1.3. 삼보 선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유무 판단 과정에서 선수에게 다른 건강 이상이 있고 해당 상태가 경기 출전에 있어 본인 또는 다른 선수에게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피아스가 파악을 하는 경우 피아스는 본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에게 분류 미결(CNC) 상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아스는 자격 지정 배경을 해당 국가삼보연맹에 통보한다.

2. 삼보 선수는 피아스에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시각장애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보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제공한다:

2.1. 국가삼보연맹은 선수 등록을 마친 후 의료진단서를 제출한다.

2.2. 의료진단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발급일이 명시되어야 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진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3. 필요한 경우 의료진단서에 추가적인 진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아스는 의료진단서와(또는) 진단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양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수에게 의료진단서(및 필요한 추가적인 진단 정보)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피아스가 선수에게 진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피아스는 정보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각장애의 요구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5. 시각장애의 요구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 정보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5.1.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선수를 대표하여 국가삼보연맹이 제공해야 하는 진단 정보를 제출해야 함을 해당 국가삼보연맹에 통지한다.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어떤 진단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 안내한다.

5.2.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진단 정보 준비 기간을 정한다.

5.3.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시각장애의 요구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등급분류 총책임자와 자격을 갖춘 최소 2명의 의학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위원들은 기밀유지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5.4. 만약 등급분류 총책임자가 진단 정보 심사에 필요한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 심사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시각장애의 요구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의 활동은 보조한다.

5.5. 가능하면 선수나 진단 정보의 출처를 특정지을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되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각 위원은 진단 정보를 심사하여 이 정보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여부를 입증하는지 판단한다.

5.6. 선수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선수는 등급분류단이 진행하는 등급분류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

5.7. 선수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가 있다고 위원회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해당 결정을 서면으로 해당 국가삼보연맹에 전달한다. 국가삼보연맹은 이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위원회 심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진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결정을 번복하게 되는 경우 국가삼보연맹에 결정 사항을 공지한다.

5.8. 만약 결정 번복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최종결정 통보를 서면으로 국가삼보연맹에 전달한다.

5.9. 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만약 등급분류 총책임자가 위원회 소속인 경우, 진단 정보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를 입증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모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피아스는 위 언급된 기능 중 일부를 등급분류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1. 스포츠 종목에 출전을 원하는 삼보 선수는 스포츠 종목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가 있어야 한다.

2. 피아스는 시각장애 요구 조건 충족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가진 삼보 선수가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과제 수행과 활동이 가능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본 등급분류 규정의 부록에 스포츠 종목에 적용되는 시각장애 요구 조건 충족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등급분류단이 심사 세션에서 선수의 장애 유무를 심사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4. 시각장애 요구 조건 충족 기준에 미달인 선수는 해당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 조건 불충' (NE) 등급을 부여받는다.
5. 등급분류단은 삼보 선수의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되는 시각장애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이는 심사 세션에서 진행한다. 심사에 참여하기에 앞서 삼보 선수는 피아스가 시각장애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6. 피아스 공인 적응 장비 (특수 헬멧) 활용에 있어 적응 장비의 사용이 특정 과제 수행과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한다.

제 10 조 스포츠등급

1. 스포츠등급은 피아스가 본 등급분류 규정으로 정하는 카테고리로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과제 수행과 활동에 시각장애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선수들을 구분한다.

1.1.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되는 시각장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선수는 본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해당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 조건 불충' (NE) 등급을 부여받는다.

1.2.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되는 시각장애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는 본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스포츠등급을 부여받는다.

1.3. '요구 조건 불충' (NE)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포츠등급 지정은 등급분류단이 심사를 통해 판단한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과제 수행과 활동에 시각장애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기반해야 한다. 심사는 제어 가능한, 공평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핵심 과제와 검사 수행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등급분류 규정 부록에 스포츠등급 부여 및 스포츠등급 상태 표시를 위한 심사 방법과 심사 기준을 명시한다.

제 11 조 분류 미결

1. 선수 심사 진행 중 어느 단계에서 피아스 또는 등급분류단이 선수의 스포츠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분류 총책임자 또는 수석 등급분류사는 선수에게 '분류 미결' (CNC) 상태를 부여한다.

2. '분류 미결' (CNC) 표시는 스포츠등급이 아니며 본 등급분류 규정에서 정하는 항의 절차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분류 미결' (CNC) 표시는 피아스 '마스터리스트'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기입된다.
3. '분류 미결' (CNC) 삼보 선수는 피아스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장 선수 심사, 등급분류단

제 12 조 등급분류단

1. 등급분류단은 심사 세션을 포함하여 선수 심사의 전체 또는 일부 진행을 위해 피아스가 임명하는 등급분류사 그룹이다.
2. 등급분류단은 2명의 공인 등급분류사와 1명의 안과의사 자격을 보유한 등급분류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수석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단을 1명의 공인 등급분류사와 1명의 안과의사 자격을 보유한 등급분류사로 구성할 수 있다.
3. 등급분류사 견습생은 공인 등급분류사 최소 인원과 별도로 등급분류단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선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3 조 등급분류단의 의무

1. 등급분류단은 심사 세션의 진행을 책임진다. 심사 세션에서 등급분류단은 다음을 수행한다:

1.1. 선수의 해당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되는 시각장애 유무 평가

1.2. 삼보 선수가 특정 과제 및 스포츠 활동을 어느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

1.3. (필요한 경우) 대회 환경에서 관찰 진행

2. 심사 세션을 마친 후 등급분류단은 스포츠등급을 지정하고 스포츠등급 상태를 정하거나 '분류 미결'(CNC) 상태를 부여해야 한다.
3.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삼보 선수의 시각장애 유무 판단은 심사 세션 진행 이전에는 피아스가 진행하되 피아스가 이를 등급분류단에 요청할 수도 있다.
4. 심사 세션은 제어 가능한, 공평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핵심 과제와 검사 수행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4.1. 낮은 기술숙련도, 노화 등의 요소가 특정 과제 및 스포츠 활동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요소는 스포츠등급 지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5. 추가적인 건강 이상이 있는 삼보 선수는 이러한 이상이 스포츠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등급분류단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6. 선수에게 부여되는 스포츠등급은 부록에 명시된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선수 심사 세션

1. 본 조는 모든 심사 세션에 적용된다.
2. 국가삼보연맹은 삼보 선수들의 본 조에 명시된 규정 이행 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삼보 선수 관련 규정:

3.1. 선수들은 심사 세션에 참여할 때 국가삼보연맹 관계자를 대동할 수 있다.

3.2. 선수가 선택한 동행인은 선수의 장애 이력과 스포츠 종목 역사를 숙지한 자여야 한다.

3.3. 삼보 선수와 동행인은 선수 심사 동의서에 서명하여 심사 진행에 동의해야 한다.

3.4. 삼보 선수는 심사 세션에서 여권 또는 신분증을 등급분류단에 제시해야 한다.

3.5. 삼보 선수는 복용중인 약이나 사용중인 의료장치/임플란트를 등급분류단에 알려야 한다.

3.6. 삼보 선수는 등급분류단의 정당한 지시를 모두 따라야 한다.

4. 등급분류단 관련 규정:

4.1. 등급분류단은 스포츠등급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수에게 장애와 관련한 의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2. 피아스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등급분류단은 심사 세션을 영어로 진행한다. 삼보 선수가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삼보연맹측에서 확보해야 한다. 본 조에 명시된 동행인과 별도로 통역사도 심사 세션에 동행할 수 있다.

4.3. 등급분류단은 어느 심사 단계에서든 스포츠등급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분류 총책임자 또는 수석 등급분류사의 동의 하에 진단서, 기술평가서, 학술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4. 등급분류단은 선수, 국가삼보연맹, 피아스(출처 무관)가 제공한 근거 자료에만 기반하여 스포츠등급을 지정한다.

4.5. 등급분류단은 스포츠등급 판단 과정을 동영상 또는 기타 기록물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5 조 대회 중 관찰

1. 등급분류단은 특정 선수에 최종적으로 스포츠등급을 지정하고 스포츠등급 상태를

정하기에 앞서 대회 중 관찰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회 중 관찰에 활용되는 방법 및 평가 중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부록에 명시되어 있다.
3. 등급분류단이 대회 중 관찰 없이 심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삼보 선수는 완료된 심사 세션 구성요소에 따라 등급분류단이 판단한 스포츠등급으로 대회에 출전한다.
4. 대회 중 관찰 대상인 삼보 선수는 '관찰 심사'(OA) 코드를 부여받는다. 이는 대회 중 관찰 기간 동안 스포츠등급을 대체한다.
5. 대회 중 관찰은 '최초 출전'인 경우 반드시 적용된다. '최초 출전'은 삼보 선수가 특정 스포츠등급으로 처음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6. 삼보 선수가 대회 중 관찰 이후에 항의를 제기한 경우 항의심사위원회가 지정한 스포츠등급의 틀 안에서 '관찰 심사'(OA) 코드를 받고 다음 가능한 때에 대회 중 관찰을 받는다.

6.1. 등급분류단은 첫 시합 종료 후 (또는 항의 후 진행 된 대회 중 관찰이 종료된 다음) 선수의 스포츠등급을 판단하여 '관찰 심사'(OA) 코드를 대체해야 한다. 대회 중 관찰 이후 스포츠등급 또는 스포츠등급 상태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변경은 즉시 효력을 발한다.

7. '최초 출전' 이후 발생한 스포츠등급 변경이 메달, 기록, 성적 등에 미치는 영향은 피아스가 판단한다.

제 16 조 스포츠등급 상태

1. 등급분류단이 선수에 스포츠등급을 지정하는 경우 스포츠등급 상태도 설정해야 한다. 스포츠등급 상태는 삼보 선수가 향후 심사를 받을지 여부와 스포츠등급에 대한 항의 제기가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2. 등급분류단이 심사 세션 결과에 따라 선수에게 부여하는 스포츠등급 상태는 다음 중 하나로 지정된다:
 - 확정 (C)
 -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 (R)
 - 지정 재검토일 이후 재심사 (FRD)
3. 첫 심사 세션에 앞서 선수는 피아스로부터 '신규'(N) 스포츠등급 상태를 부여받는다. 피아스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신규'(N) 스포츠등급 상태를 보유한 선수는 국제대회 참가에 앞서 심사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4. 삼보 선수가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고 시력의 호전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을

등급분류단이 확인한 경우 또는 안구대체물을 착용하는 경우 (부록 1) 선수에게 '확정'(C) 스포츠등급 상태를 지정한다.

4.1. '확정'(C) 스포츠등급 상태를 가진 삼보 선수는 향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본 등급분류규정의 항의, 의료검진, 스포츠등급 기준 변경과 관련한 조항은 예외).

5. 등급분류단이 추가 심사 세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수에게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R) 스포츠등급 상태를 부여받는다.

5.1. 등급분류단은 추가 심사 세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은 (나열된 범주로 국한되진 않는다) 요인에 기반하여 할 수 있다: 삼보 선수가 최근에 피아스 공인 대회 활동을 시작함, 시각장애가 기복이 있거나 심해지고 있음, 장애가 상시적이나 안정적이지 않음, 근골격 성장이 진행 중, 스포츠 관점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음.

5.2. 스포츠등급 상태가 'R'인 삼보 선수는 피아스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국제 대회 참가 이전에 심사를 거쳐야 한다.

6. 등급분류단이 향후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만 특정 기간이 지나서 (지정 재검토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삼보 선수는 '지정 재검토일 이후 재심사'(FRD) 스포츠등급 상태를 부여받는다.

6.1. '지정 재검토일 이후 재심사'(FRD) 삼보 선수는 지정 재검토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6.2. '지정 재검토일 이후 재심사'(FRD) 삼보 선수는 의료검사 요청과(또는) 항의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재검토일 이전에 심사를 받을 수 없다.

7. 피아스가 본 규정 부록에 명시된 스포츠등급 기준과(또는) 심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7.1. 피아스는 선수의 '확정'(C) 스포츠등급 상태를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R)로 변경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2. 피아스는 선수의 지정 재검토일을 해지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3. 상기 두가지 경우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가삼보연맹에 7일 이내로 통보한다.

제 17 조 다중 스포츠등급

1. 본 조는 한가지 이상의 스포츠등급을 잠재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2. 고강도 운동 시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이상을 보유한 삼보 선수는 시력 이상에 해당하는 스포츠등급 여러개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2.1. 국가삼보연맹은 선수의 이러한 이상과 다중 스포츠등급을 받을 권리에 대해 피아스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2.2. 선수에게 본인의 다중 장애에 따른 각 스포츠등급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3. 심사를 마친 후 삼보 선수는 본인이 출전을 원하는 스포츠등급을 ('선호되는 스포츠등급') 선택해야 한다. 만약 특정 스포츠등급의 지정이 대회 중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삼보 선수는 '최초 출전'에 앞서 '선호되는 스포츠등급'을 선택해야 한다.

2.4. 선수는 '선호되는 스포츠등급'으로 대회 출전이 가능하며 선수의 '선호되는 스포츠등급'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개된다.

3. 시각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가진 삼보 선수는 이러한 장애가 스포츠 성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4. 삼보 선수가 본인의 '선호되는 스포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a) 첫 심사 세션이 종료된 시즌 이후
 b)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후, 다음 시즌 시작 전

5. 선수가 소속된 국가삼보연맹이 '선호되는 스포츠등급' 변경 신청을 접수한다. 본 조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피아스에 신청을 접수한다.

6.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선수가 원하는 시기에 어느 스포츠등급에 대해서든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 18 조 심사 결과 공지

1. 선수 심사 결과는 선수와(또는) 선수가 소속된 국가삼보연맹에 심사 종료 후 제공되며 대회 종료 10일 이내로 공표되어야 한다.

2. 피아스는 선수 심사 결과를 피아스 공식 사이트에 등급분류 총괄 명단('마스터리스트')으로 공표한다.

제5장 '요구 조건 불충' 스포츠등급

제 19 조 일반 조항

1. 만약 피아스가 판단하기에 삼보 선수가:

1.1. 시각장애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아스는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을 지정한다.

2. 등급분류단이 판단하기에 시각장애를 가진 삼보 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요구되는 시각장애가 없는 경우 해당 종목에서 선수에게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을 지정한다.

제 20 조 요구되는 장애 없음

1. 만약 피아스가 판단하기에 삼보 선수가 시각장애를 가지지 않은 경우:

1.1. 선수는 심사 세션에 참석할 수 없다

1.2. 선수에게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이 지정되고 '확정'(C) 스포츠등급 상태가 지정된다.

2. 피아스 또는 (피아스가 지정한) 등급분류단이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을 지정한 삼보 선수가:

2.1. 시각장애가 아닌 장애를 가진 경우

2.2. 시각장애가 주되고 상시적인 장애가 아닌 경우

다음 등급분류단에 결정 재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해당 종목 대회에 출전할 권리가 없다.

제 21 조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없음

1. 첫번째 등급분류단이 삼보 선수에게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두번째 등급분류단은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을 지정받은 선수의 두번째 심사 세션을 진행한다.

1.1. 두번째 심사 세션을 기다리는 동안 선수에게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이 지정되며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R) 스포츠등급 상태가 지정된다. 재심사 이전에는 삼보 선수는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1.2. 만약 두번째 심사 세션에서 삼보 선수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또는 수석 등급분류사가 정한 두번째 심사 세션에 삼보 선수가 참가를 거부한 경우)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과 '확정'(C) 스포츠등급 상태가 지정된다.

2. 만약 삼보 선수가 앞서 부여받은,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이 아닌 스포츠등급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는데 등급분류단이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을 지정하는 경우 항의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할 추가이자 마지막 심사 세션에 참여할 기회가 선수에게 주어진다.

3. 선수에게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이 지정되는 것은 시각장애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피아스가 주관하는 스포츠 종목에 선수가 출전할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제6장 항의 제기

제 22 조 항의 적용 범위

1. 항의는 선수 스포츠등급과 관련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선수 스포츠등급 상태에 대해서는 항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을 지정받은 선수와 관련해서는 항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선수가 소속된 국가삼보연맹만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3 조 항의 제기

1. 국가삼보연맹은 소속 선수와 관련하여 대회 기간 중에만 또는 심사 현장에서만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대회 기간 중 심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항의는 공표 시점으로 부터 1시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만약 심사 결과가 대회 중 관찰 이후 공표되는 경우 공표 시점으로 부터 15분 이내로 항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3. 만약 삼보 선수가 대회 중 관찰 대상인 경우 국가삼보연맹은 '최초 출전' 전후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 출전' 이전에 항의가 제기된 경우 삼보 선수는 항의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 24 조 항의 절차

1. 항의를 제기할 때 국가삼보연맹은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피아스가 대회 기간 동안 제공하는 항의서 양식을 작성하고 피아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자양식도 작성한다. 다음 내용을 기입한다:

1.1. 항의를 제기하는 선수 성명

1.2. 항의하고자 하는 결정 내용의 세부사항 및 사본

1.3. 항의를 제기하는 사유, 항의하고자 하는 결정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국가삼보연맹이 생각하는 근거

1.4. 위반되었다고 생각되는 규정 레퍼런스

2. 항의 서류는 해당 대회의 수석 등급분류사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달한다. 수석 등급분류사는 서류를 접수하여 피아스와 협의를 통해 서류를 심사하며 그 결과는 다음

중 하나이다:

2.1. 수석 등급분류사 판단에 본 조에서 정하는 항의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항의건은 기각한다.

2.2. 수석 등급분류사 판단에 본 조에서 정하는 항의 절차에 적합한 항의건은 접수한다.

3. 항의건이 기각된 경우 수석 등급분류사는 피아스와 국가삼보연맹에 이를 알리고 1근무일 이내로 국가삼보연맹에 서면으로 기각 배경을 설명한다.

4. 항의건이 접수된 경우:

4.1. 항의건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 선수 당사자의 스포츠등급은 유지되지만 스포츠등급 상태는 이미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R)가 아닌 이상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R)로 변경된다.

4.2. 수석 등급분류사는 항의가 제기된 시점에 진행 중인 대회 기간 내 또는 다음 대회 기간에 새로 심사를 진행할 항의 심사 위원회를 (등급분류단) 임명한다.

4.3. 피아스는 선수 심사를 새로 진행하는 일시를 국가삼보연맹에 공지한다.

제 25 조 항의 제기 합리적 근거

1. 국가삼보연맹은 소속 선수와 관련하여 잘못된 스포츠등급이 지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삼보연맹은 서면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선수 재심사 요청을 피아스에 전달한다. 요청 근거의 합리성 평가는 피아스 고유 권한이다.

제 26 조 항의 심사 위원회

1. 수석 등급분류사는 항의건 심사 기간 중 등급분류 총책임자가 허가하는 경우 등급분류 총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 또는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항의 심사 위원회를 임명할 때 위원회 임명과 관련한 본 등급분류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3. 항의 대상인 결정을 내린 등급분류단 일원들은 항의 심사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항의 심사 위원회가 진행 할 재심사 일시를 국가삼보연맹에 알린다.
5. 항의 심사 위원회는 본 등급분류규정을 준수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항의 심사 위원회는 재심사 과정에서 항의건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6. 항의 심사 위원회는 스포츠등급을 판단하고 스포츠등급 상태를 지정한다. 항의 심사

위원회의 결정을 모든 당사자에게 공지할 때 공지와 관련한 본 등급분류규정의 조항을 준수한다.

7. 항의 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국가삼보연맹은 한 대회에서 종결된 심사에 대해서 추가 항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7 조 항의 심사 위원회 부재

1. 대회 기간 중 항의가 제기되었으나 해당 대회 기간 중 항의건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

1.1. 선수는 항의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 항의 대상인 스포츠등급으로,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R) 스포츠등급 상태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2.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항의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 7 장 징계 및 기타 위반

제 28 조 심사 세션 진행 중 위반

1. 삼보 선수는 심사 세션 참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2. 국가삼보연맹은 선수가 심사 세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삼보 선수가 심사 세션에 불참한 경우 등급분류단은 수석 등급분류사에 불참 사실을 알린다. 수석 등급분류사 판단에 합당한 불참 사유가 있고 실리에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 선수가 다음 심사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일시를 지정할 수 있다.
4. 삼보 선수가 합리적인 불참 사유를 해명하지 못한 경우나 삼보 선수가 연이어 심사 세션에 불참한 경우 스포츠등급은 지정되지 않으며 해당 선수는 관련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 29 조 심사 세션 진행 중지

1. 등급분류단이 아래 나열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또는 여러 사유로 스포츠등급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수석 등급분류사와 협의하여 심사 세션을 중지할 수 있다:

1.1. 선수가 본 등급분류규정 중 일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2. 등급분류단이 정당히 요구한 의료 정보를 선수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1.3. 등급분류단 판단에 선수가 복용하는 (복용하지 않는) 약과(또는) 사용하는 의료 시술/장치/임플란트가 공정하게 스포츠등급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1.4. 등급분류단이 공정하게 스포츠등급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지시 사항의 이행을 제한하거나 불가하게 하는 건강 상태인 경우

1.5. 삼보 선수가 효과적으로 등급분류단과 소통이 불가한 경우

1.6. 삼보 선수가 등급분류단 일원의 합당한 지시 사항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수 없어서 심사 세션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경우

1.7. 선수가 보여주는 능력이 등급분류단이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심사 세션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경우

2. 등급분류단이 심사세션을 중지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2.1. 선수와 해당 국가삼보연맹에 중지된 사유를 설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선수로부터 요구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

2.2. 등급분류 총책임자와(또는) 수석 등급분류사가 만족할 정도로 삼보 선수가 상황을 개선한 경우 심사 세션 재개

2.3. 삼보 선수가 지정된 기한을 어기거나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심사 세션은 중단되고 삼보 선수는 스포츠등급 심사가 종료되기 전 까지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3. 등급분류단이 심사 세션을 중단한 경우 등급분류단은 선수에게 '분류 미결'(CNC) 상태를 지정한다.

4. 심사 세션 중지는 고의적인 사실 왜곡과 관련하여 향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30 조 고의적 사실 왜곡

1. 징계 대상인 선수의 위반은 고의적으로 본인의 기술과(또는) 능력과(또는) 시각장애의 정도 또는 성격과 관련한 사실을 심사 세션 진행 중과(또는) 스포츠등급 지정 후 어느 시점에서든 왜곡하는 (행동 또는 행동하지 않음으로) 것이다. 이러한 위반은 '고의적 사실 왜곡'으로 징계 대상이다.

2. 선수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고의적 사실 왜곡 은폐, 선수 심사 단계 위반 등 어떤 형태로든 가담한 경우 선수 및 보조인원은 징계 대상이다.

3. 고의적 사실 왜곡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피아스는 청문회를 열고 삼보 선수 또는 선수 보조 인원의 고의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단한다.

4. 고의적 사실 왜곡과(또는) 가담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선수 또는 보조 인원에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가 취해진다:

4.1. 선수 실격

4.2.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 지정 및 1~4년 기간으로 '지정 재검토일 이후 재심사'(FRD) 스포츠등급 상태 지정

4.3. 1~4년간 대회 출전 금지

4.4.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선수 성명 및 실격 기간 공개

5. 한 번 이상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왜곡에 가담한 선수는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과 최소 4년 이상 기간으로 '지정 재검토일 이후 재심사'(FRD) 스포츠등급 상태 또는 최대 영구적으로 '요구 조건 불충'(NE) 스포츠등급을 지정받는다.
6. 선수 보조 인원으로 분류되는 전문가가 한 번 이상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왜곡에 가담한 경우 대회 조직 업무에서 4년 이상 또는 영구히 배제된다.
7. 만약 다른 국제스포츠연맹이 선수 또는 보조 인원에 대해 고의적 사실 왜곡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선수와 보조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아스는 이를 인용한다.
8.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가담한 선수 또는 보조 인원 및 국가대표선수단에 적용되는 조치는 피아스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유효하다.
9. 피아스가 본 등급분류규정에 따라 취한 징계 조치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등급규정 상고위원회 현행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8장 기타 조항

제 31 조 의료검진

1. 본 조는 '확정'(C) 또는 '지정 재검토일 이후 재심사'(FRD) 스포츠등급 상태를 보유한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2. 의료검진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선수 건강 이상의 성격 또는 정도가 변경되어 특정 과제 수행 및 스포츠 활동 능력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변화가 훈련도, 적합도, 능력의 수준과는 무관한 형식으로 발현될 때이다.
3. 의료검진 신청은 국가삼보연맹이 접수한다 (비용 100달러 납입 및 기타 증빙서류 접수 동반). 의료검진 신청서에 선수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어느정도 변화했는지 그리고 특정 과제 수행 및 스포츠 활동 능력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입해야 한다.
4. 의료검진 신청은 변화 발생 후 조속한 시일 내로 피아스에 전달되어야 한다.
5. 등급분류 총책임자는 의료검진 신청을 접수받은 후 실질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때에 해당 신청건을 수락할지 결정한다.
6. 어느 선수나 또는 보조인원이든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였으나 국가삼보연맹 또는 피아스에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 사실 왜곡 혐의를 받을 수 있다.
7. 의료검진 신청이 수락된 경우 선수의 스포츠등급 상태는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R)로 즉시 변경되어 효력을 발한다.

제 32 조 선수 정보 활용

1. 피아스는 등급분류 자료를 등급분류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
2. 피아스가 가공하는 모든 등급분류 자료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이어야 한다.
3. 피아스는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선수의 등급분류 자료를 가공할 수 있다.
4. 만약 삼보 선수가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를들어 미성년자) 해당 선수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기타 지명 대리인이 대신 동의해야 한다.
5. 현행법상 허용되는 경우 피아스는 선수의 동의 없이 등급분류 자료를 가공할 수 있다.

제 33 조 등급분류 분야 연구

1. 피아스는 연구 목적으로 선수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아스가 선수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본 등급분류 규정과 모든 윤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선수가 연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4. 해당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피아스는 등급분류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수가 연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중 일부를 피아스가 공개해야 하는 경우 공개에 앞서 해당 선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익명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를 특정화 할 수 없는 형식으로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34 조 삼보 선수 공지

1. 피아스는 등급분류 자료를 제공하는 삼보 선수들에게 다음을 알린다:

1.1. 피아스가 등급분류 자료를 수집한다는 사실

1.2. 등급분류 자료 수집의 목적

1.3. 등급분류 자료 보관 기간

제 35 조 등급분류 자료 보호

1. 피아스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1.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 분실, 탈취 또는 무허가 접근, 파괴, 활용,

변경 및 유출을 방지하여 등급분류 자료를 보호한다.

1.2. 등급분류 자료를 다루는 직원과(또는) 외부 전문가가 본 등급분류규정을 준수하여 등급분류 자료를 활용하게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 36 조 등급분류 자료 공개

1. 피아스는 다른 등급분류 기관에 등급분류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다른 등급분류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경우와(또는) 국내법에 따른 공개인 경우는 예외이다.
2. 피아스는 본 등급분류 규정을 준수하고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 등급분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37 조 등급분류 자료 보관

1. 피아스는 등급분류 자료를 수집 목적에 따라 필요할 때까지만 보관한다. 등급분류 자료가 등급분류 목적을 위해 더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자료는 삭제, 파쇄 또는 완전히 익명화 되어야 한다.
2. 피아스는 등급분류 자료의 보관 기간과 관련한 원칙을 정하고 공개한다.
3. 피아스는 등급분류사와 등급분류요원에게 적용되는 등급분류 자료 보관과 관련한 정책과 절차를 선수 등급분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만 시행한다.

제 38 조 등급분류 자료 접근 권한

1. 피아스는 선수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1.1. 피아스가 본인의 등급분류 자료를 가공 중인지 여부 및 보관 중인 등급분류 자료 내역

1.2. 피아스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등급분류 자료 사본

1.3. 피아스가 보관 중인 등급분류 자료의 수정 및 삭제

2. 본 조에 명시된 요청은 삼보 선수 본인이 직접 또는 국가삼보연맹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적절한 기한 내로 처리된다.

제 39 조 등급분류 총괄 명단 (‘마스터리스트’)

1. 피아스는 등급분류 총괄 명단을 작성하며 선수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스포츠등급, 스포츠등급 상태를 기록하고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표시한다.

2. 피아스는 모든 국가삼보연맹들에게 '마스터리스트'를 피아스 공식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제 9 장 항소

항소는 삼보 선수 심사 절차와(또는) 등급분류 진행 과정에 대한 항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절차로 이후 제기된 항의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다.

제 40 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1. 국가삼보연맹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1 조 항소 제기 및 심사

1. 국가삼보연맹이 스포츠등급 지정과(또는) 스포츠등급 상태 지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여 선수에게 잘못된 스포츠등급 또는 스포츠등급 상태가 지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아스는 등급분류 상고위원회를 결성하여 항소를 심사한다.
3. 항소 제기 및 해결에 있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등급규정 상고위원회 현행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용어

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삼보 선수: 등급분류 관점에서 국제 대회 (피아스가 규정하는) 또는 국내 대회(각 국가삼보연맹이 규정하는) 스포츠 경기 출전자 및 국가삼보연맹이 규정하는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지역 대회) 대회 스포츠 경기 출전자

선수 보조인원: 삼보 선수를 대상으로 훈련, 교육, 대회 참가 등에 참여하는 코치, 매니저, 통역사, 에이전트, 팀 전문가, 임원, 의료진 등

수석 등급분류사: 특정 대회에서 본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과 관련한 사안의 관리, 조율, 이행을 위해 피아스가 임명한 등급분류사

등급분류 자료: 선수와(또는) 국가삼보연맹과(또는) 제 3 자가 등급분류 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해 제공한 신상정보와(또는) 기밀개인정보

진단 정보: 시각장애의 유무, 성격, 정도 또는 건강 상태를 평가 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또는) 기타 서류

의료검진 요청: 국가삼보연맹이 선수를 대신하여 접수하는 의료검진 요청

등급분류사: 피아스가 권한을 부여한 등급분류단 일원

분류 미결: 심사가 시작되었으나 마쳐지지 않은 선수에 적용되는 표시

등급분류: 시각장애가 스포츠 종목 주요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삼보 선수들을 스포츠등급별로 구분하는 활동. 이를 삼보 선수 등급분류라 한다.

규정집: 선수 등급분류 규정과 선수 심사 국제 표준, 선수 최소 장애 정도 국제 표준, 항의 및 청원 절차 등

등급분류사 행동강령: 등급분류사가 지켜야 할 행동 및 윤리 표준

등급분류사 역량: 피아스 판단에 피아스가 관장하는 스포츠 종목에서 삼보 선수 심사를 할 가능성과 권한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역량과 능력

국제 표준: 규정집을 보충하는 문건으로 등급분류에 대한 추가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

우수사례모델: IPC 가 규정집과 국제 표준 이행에 도움 되도록 마련한 특별 가이드라인

대회 중 관찰: 등급분류단이 선수의 시각장애가 특정 과제와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요구 조건 부합도 파악을 완료하기 위해 대회 중 선수를 관찰하는 과정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피아스가 관장하는 스포츠 종목에 피아스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되고 구체화된 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선수의 시각장애

시각장애: 선수의 시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구 구조, 시신경 또는 시신경 경로나 두뇌 시각피질의 장애

등급분류 총괄 명단 ('마스터리스트'): 피아스가 작성하는 명단으로 스포츠등급과 스포츠등급 상태를 부여받은 선수들의 정보

선수 심사: 본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스포츠등급과 스포츠등급 상태를 지정하기 위해 삼보 선수를 평가하는 과정

최초 출전: 대회에서 선수가 처음으로 겨루는 경기

개인정보: 선수와 관련된 또는 고유의 정보

등급분류 규정: 피아스가 삼보 선수 심사와 관련하여 정한 정책, 절차, 규정 및 정의

고의적 사실 왜곡: 심사 세션 진행 중과(또는) 스포츠등급 지정 후 어느 시점에서든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기술과(또는) 능력의 유무나 정도에 대해 국제삼보연맹이나 국가삼보연맹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

심사 세션: 삼보 선수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등급분류단이 선수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유무를 평가하는 세션으로 특정 과제와 스포츠 종목의 기본이 되는 활동 수행 능력 정도에 따라 스포츠등급을 지정. 심사 세션에 대회 중 평가가 포함될 수 있음.

등급분류사 인증: 등급분류사가 인증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분류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피아스가 평가하는 절차

등급분류 체계: 피아스가 관장하는 스포츠 종목에서 스포츠등급을 고안하고 부여하는데 활용되는 절차, 방법 및 평가 기준

스포츠등급: 삼보 선수가 특정 과제와 스포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수준에 따라 피아스가 분류하는 대회 출전 카테고리

의료진단서: 삼보 선수가 선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평가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국가삼보연맹이 제출하는 증빙

스포츠등급 상태: 스포츠등급에 적용되는 표시로 삼보 선수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항의를 제기 했는지 등을 나타냄

지정 재검토일: 등급분류단이 지정한 날짜로 '지정 재검토일 이후 재심사'(FRD) 스포츠등급을 받은 선수가 지정일 이전에는 의료검진 신청과(또는) 항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세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

부록 1

1. 스포츠 종목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신체 기능 장애

스포츠 종목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주요 장애는 상당한 시각장애로 이 장애는 주된 장애이고 상시적이어야 한다. 시각장애 삼보 선수는 안구구조, 시신경 또는 시신경경로, 두뇌 시각피질 손상으로 시력이 저하 또는 상실된 선수이다.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의 예는 망막염 색소 침착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다.

시각장애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 종목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기준은 더 잘 보이는 눈에 최대 광학 교정을 한 상태에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광각이 없는 상태부터 시력 0.1까지와(또는) 시야 동심원 감소 20도까지이다.

2. 스포츠 종목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기준 및 선수 스포츠등급 판별 기준

2.1. 시각장애인삼보 종목에 적용되는 능력기준 등급분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판별을 위해 시각장애의 특성과 파라미터를 활용하고 평형감각 유지 능력을 점수로 측정하여 스포츠등급 분류의 원칙으로 삼는다. 평형감각 유지 능력을 평가 지표로 선택한 근거는 삼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공격 및 방어 기술을 시전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훈련 및 경기 중 시각장애 삼보 선수들을 관찰한 결과 전맹 및 약시 삼보선수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로 촉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선수는 상대방에 가까이 접근하려 하고 추가적인 왕복운동을 통해 상대방 몸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본인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선수의 자세를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들어 균형이 흐트러지고 기술을 걸기가 쉬워진다. 전정기관에 무리가 오면 동일한 조건의 정상시력 삼보 선수 대비 전맹 및 약시 선수는 자세 안정성이 더 심하게 약화된다. 이 영향은 경기에서 드러났는데 아르가 경기규칙에 따라 선수들을 소매와 옷깃을 서로 잡고 서는 원위치로 복귀시킨 후 전맹 및 약시 선수들의 기술은 경기 초반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며 상대 선수의 시각장애가 덜한 경우 그 선수에 패하게 된다. 따라서 능력 수준에 따라 삼보 선수의 스포츠등급을 2개로 분류하였다:

SVI1 – 해당 스포츠등급으로는 전맹 선수 및 특수 헬멧을 착용한 약시 선수가 참가한다.

SVI2 – 약시 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등급

2.2. 대회 참가를 위한 최소 통과 기준은 6점 만점 시력 평가에서 1점 감점이다. 만약

선수가 평가에서 0~5점을 받으면 대회 출전이 허가된다. 해당 평가는 안과의사 자격을 보유한 등급분류사가 진행한다.

2.3. 평형감각 측정대에서 평형감각 유지 능력 측정 결과에 따라 2가지 스포츠능력등급으로 분류한다 (SAMBO Visual Impairment): SVI1 (0~3점), SVI2 (4~11점)

3. 평가 절차

3.1. 스포츠 종목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시각장애 유무 평가는 안과 검진 결과에 따라 진행되며 더 잘 보이는 눈에 최대 광학 교정을 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점수로 채점된다:

0 – 전맹

1 – 광각 있음

2 – 시력 0.005 이하 또는 시력 0.009 이하에 안진과 사시 동반과(또는) 시야 동심원 감소 5도 이하

3 – 시력 0.005 초과 0.009 이하에(또는) 시야 동심원 감소 10도 이하

4 – 시력 0.06 이하에(또는) 시야 동심원 감소 15도 이하

5 – 시력 0.1 이하에(또는) 시야 동심원 감소 20도 이하

6 – 시력 0.1 초과에(또는) 시야 동심원 감소 20도 초과

3.2. 평형감각 유지 능력 평가

3.2.1. 평형감각 유지 능력 평가를 위해 선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등급분류사에게는 정확하고 해석이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평형감각 측정법을 활용한다. 검사는 평형감각훈련기 ST-150 (등록번호 FRS 2010/07900, 측정기구인증서 №41201), STPL (Global Medical Device Nomenclature code 43115 balance/mobilit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software)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단, 다른 평형측정기의 사용도 가능하며 이는 특정 수치가 아닌 측정 초반과 후반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선수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3.2.2. 평가는 시력교정없이, 즉 선수가 경기하는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시력 교정 렌즈를 벗은 다음 최소 30분 적응 시간이 주어진다. 평가가 진행되는 실내 공간은 밝지 않은, 분산된 조명을 갖춰야 하고 갑작스러운 특히 날카로운 소리가 나서는 안되며 평가 진행 중 주변에 사람의 이동을 금한다. 실내 다른 사물은 평가 대상 선수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2.3. 롬버그 2단계 측정을 실시하며 눈을 뜬 상태, 눈을 감은 상태로 진행한다. 평가 대상자가 준비된 시점으로 부터 측정 시작까지 10초 지연을 적용한다. 각 측정 단계는 30초간 진행한다. 삼보 선수는 두번째 단계에서 눈을 감아야 하는데 차광성을

가지고 얼굴에 밀착하는 안대의 사용이 권장된다. 평가 진행 중 삼보 선수는 정자세로 서서 정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평가 진행 중 선수는 움직이거나 팔을 흔들거나 무게 중심을 한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옮기거나 머리를 돌려서는 안된다. 평가 진행 중 선수의 집중을 흐트려서는 안된다.

3.2.4. 정적 평형감각 채점 기준:

0 – 측정 2단계에서 일 변화 속도(Av)와 면적(S)의 감소가 감지되고 압력 중심이 점차 지지면적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압력 중심의 진동이 점차 감소한다

1 - 측정 2단계에서 일 변화 속도(Av)와 면적(S)의 감소가 감지되나 압력 중심이 점차 지지면적의 중심으로 옮겨가거나 압력 중심의 진동이 점차 감소하지는 않는다

2 - 측정 2단계에서 일 변화 속도(Av)는 증가하고 면적(S)은 감소한다

3 - 측정 2단계에서 일 변화 속도(Av)는 감소하고 면적(S)은 증가한다

4 - 측정 2단계에서 일 변화 속도(Av)와 면적(S)이 증가한다

5 - 측정 2단계에서 일 변화 속도(Av)와 면적(S)이 증가하고 압력 중심이 지지면적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

3.2.5. 전정기관에 무리를 가한 후 정적 평형감각 평가

눈을 뜬 상태에서 정자세로 머리 돌리기 전후 스타토키네시오그램 면적의 변화를 비교한다. 선수가 측정대에 올라서서 정자세로 30초간 평형감각 측정을 마친 후 머리를 10회 천천히 돌려서 10초 대기 후 정자세로 30초간 평형감각 측정을 진행한다:

0 – 머리 돌린 후 측정에서 면적(S) 증가 60% 이상

1 - 머리 돌린 후 측정에서 면적(S) 증가 60% 이하

4. 스포츠등급 파라미터, 스포츠등급 상태 지정

총점에 따라 선수들은 2가지 스포츠등급(SAMBO Visual Impairment)으로 구분된다: SVI1 (0~3점), SVI2 (4~11점).

안과 검사 결과로 6점을 받은 삼보 선수는 '요구 조건 불충'(NE) 등급이 주어지고 해당 선수는 스포츠 종목 대회에 출전이 불가하다.

의안을 착용하거나 망막이 없거나 시신경이 완전히 퇴화한 삼보 선수는 SVI1 스포츠등급을 지정받고 '확정(C)' 스포츠등급 상태를 부여받는다. '최초 출전'인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등급분류단은 첫 경기 이후에 '확정(C)' 스포츠등급 상태를 지정한다.

안과 검사 결과로 삼보 선수가 0 또는 1점이나 평형감각측정에서 시력이 평형감각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점수 총합이 4점 이상인 경우 선수는 점수 총합에 해당하는 스포츠등급을 부여받고 스포츠등급 상태 대신 '관찰 심사'(OA) 코드를 받는다. 이 코드는 대회

관찰 중 스포츠등급 상태를 대체한다. 관찰 중 삼보 선수가:

- 기술 시전에 필요한 정도보다 더 가까이 상대방에게 자주 다가가거나
- 원위치로 돌아온 다음 기술 시전이 경기 초반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 예를들어 다리 걸기를 감으로 시전하거나 시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 등급분류단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

선수에게 SVI1 등급을 지정하고 '관찰 심사'(OA) 코드를 '스포츠등급 상태 확인요'(R)로 대체한다. 이러한 변경이 '최초 출전'이후 일어난 경우 해당 선수가 계속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등급분류단과 대회 수석심판이 내린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심사 세션을 마친 후 삼보 선수는 등급분류 보고서(부록 2)를 받으며 선수 개인정보, 평가 결과, 지정된 스포츠등급 및 스포츠등급 상태가 기록되어 있다. 등급분류 보고서에 등급분류단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스포츠등급과(또는) 스포츠등급 상태를 대회 중에 최종 판정해야 하는 경우 (OA와 R의 경우) 최종 판정 이후 선수에게 두번째 등급분류 보고서를 발급한다.

부록 2

등급분류 보고서

선수 성명 _____

항목	점수
시력 평가	
정적 평형감각 평가	
전정기관에 무리를 가한 후 정적 평형감각 평가	
총점:	

지정된 스포츠등급 _____ 지정일 _____

지정된 스포츠등급 상태 _____

안과의사 _____ / _____/

등급분류사1 _____ / _____/

등급분류사2 _____ / _____/

부록 3

전맹 및 약시 삼보선수용 헬멧

제원 (그림 1)

번호	명칭	재질	본 수	구성품 수량
본체				
1	이마 상단	수입산 인조가죽	1	1
2	측면 상단	수입산 인조가죽	1	2
3	정수리 상단	수입산 인조가죽	1	1
4	고리	수입산 인조가죽	1	2
5	귀	수입산 인조가죽	1	2
6	머리끈 연결부	수입산 인조가죽	1	2
7	장식	수입산 인조가죽	1	1
8	눈가리개 상부	망	1	1
9	눈가리개 하부	면	1	1
10	눈가리개	편직	1	1
11	이마 안감	인조 스웨이드	1	1
12	측면 안감	인조 스웨이드	1	2
13	정수리 안감	인조 스웨이드	1	1
14	고리 덧댐	신발용 가죽	1	2
삽입물				
15	중앙 삽입물	발포폴리에틸렌 5 mm	1	1
16	측면 삽입물	발포폴리에틸렌 5 mm	1	2
17	정수리 주변 삽입물	발포폴리에틸렌 5 mm	1	1
18	귀 주변 삽입물	발포폴리에틸렌 15 mm	1	2
19	눈 앞 삽입물	발포폴리에틸렌 5 mm	1	2
20	눈가리개 삽입물	발포폴리우레탄 10 mm	1	1
고정장치				
21	머리끈 연결부 찍찍이	찍찍이 50 mm		1
22	턱끈 찍찍이 걸림고리부	검은색 찍찍이 25 mm		2
23	턱끈 찍찍이 갈고리부	검은색 찍찍이 25 mm		2
24	머리끈 걸림고리부	검은색 찍찍이 25 mm		2
25	머리끈 찍찍이 갈고리부	검은색 찍찍이 25 mm		2
26	머리끈	검은색 면띠 25 mm		1
27	턱끈	검은색 면띠 25 mm		1
28	테두리	인조가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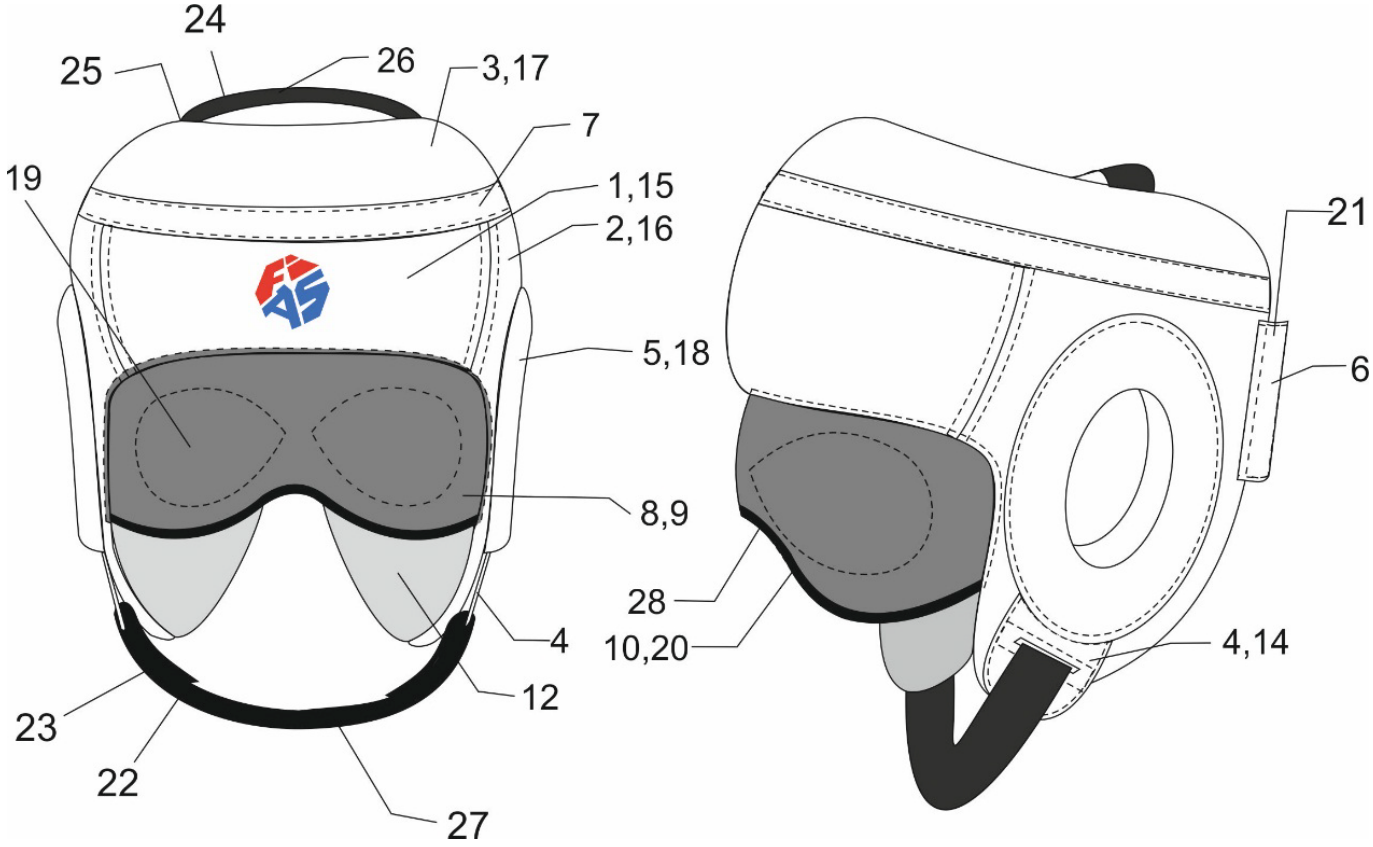


그림 1. 시각장애인삼보 특수 헬멧

시각장애인 삼보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를 위해 제작된 특수 헬멧이다. 부족한 시력으로 인해 경기 중 충돌을 적시에 회피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선수 머리와 눈 부위의 부상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또한 약시인 경우 경기 중 잔여 시력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차광성을 가진 검은색 눈가리개가 헬멧에 적용된다. 이 때 눈가리개가 닿는 뺨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며 광각을 가진 선수가 항상 한 방향에서 비춰지는 빛을 기준으로 본인 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있기 때문이다. 헬멧의 발포폴리에틸렌 삽입물은 이마, 관자놀이, 귀를 보호하여 경기중 부상을 방지한다. 헬멧은 머리에 찍찍이로 고정된다. 찍찍이는 뒤통수, 정수리, 턱을 따라 헬멧을 고정한다. 헬멧은 부상 위험이 가장 높은 머리 부위를 보호하고 상단에는 공기순환을 위해 열려있고 긴머리를 밖으로 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및 심판이 허락하는 경우). 귀 부위에는 추가적으로 보호 고리가 있으며 심판의 지시사항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게 한다.

헬멧 외부는 탄력있는 인조가죽으로 헬멧 관리의 편리성을 확보한다. 헬멧 내부는 인조 스웨이드로 경기 중 헬멧이 움직이거나 뒤틀리지 않게 한다.

눈가리개는 부드러운 망과 면으로 제작되어 피부 호흡을 보장한다.

눈가리개 하단 테두리는 광대뼈와 코에 밀착되고 눈가리개 아래를 통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사이즈: M (머리 모양에 맞게 조절 가능)

색상: 청색 또는 홍색

무게: 200±20 그람